

【 경기도의회 K-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】

건명	「경기도 K-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」 요구사항 조치결과
내용	투자의향서 및 기본협약 체결 시, 지방의회 동의 누락 여부 등

□ 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.

(부서명 : 한류월드사업단)

자료 문의	구 분	직 위(급)	성 명	전 화
	담 당 팀장	한류기획팀장	김 백 식	031-8008-8171
	담 당 자	시설 6 급	권 순 식	031-8008-8174

K-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

요구사항	조치결과
1. 투자자의향서 및 기본협약 체결 시, 지방의회 동의 누락 여부 - 경기도에서는 향후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 체결 시,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,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등 관련 조례 이행 및 절차를 준수하고, 본건과 관련 책임자의 직무유기에 상응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는 3개월 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 (감사총괄담당관, 한류월드사업단)	○ 투자자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, 기본 협약은 계약으로 동의대상 아님
2.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 누락 여부 -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2항5호에 의하면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 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와 자문을 받아야 하는 바, 향후 해당부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본건과 관련 책임자의 직무유기에 상응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는 3개월 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(감사총괄담당관, 한류월드사업단)	○ 법무법인 자문결과, - 조례 제4조제2항제5호는 중요사항 해당 여부에 대한 별도의 기준 및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 공유재산이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재산 관리관의 재량에 해당되며, - 재산관리관이 중요사항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재량행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
3.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 -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3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법 제13조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,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	○ 법제처 유권해석('16.12.27. 요청)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※ '17.3.10. 현재 미회신

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. - 50년 범위 내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동조항은 예외규정으로써 도시개발법 제69조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20년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보아 50년 범위 내에서만 갱신과 임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. - 따라서 50년 범위 내로 임대를 하고, 그 이후 49년까지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50년 범위 내에서만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, 해석이 모호하므로, 대부계약서 제2조2항 갱신규정을 무효화 하는 수정계약을 이행할 것(한류월드사업단)	
4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이행여부 - 경기도는 향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투기업과 사업 추진 시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신용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, 이를 명문화하여 관련 조례인 「경기도 외국인 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무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국내·외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, 추진 계획과 결과를 제출 하기 바람.(투자진흥과)	○ 해당없음
5. 한류마루에서 K-컬처밸리 사업으로 사업 계획 변경과정 - 조사특위가 강제소환권이 없어 더 이상의 증인을 출석요구 하여 조사가 불가하므로 향후 사업계획 변경과정에 대한 집행부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임.(한류월드사업단)	○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모두 설명하였음

【 경기도의회 K-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】

건명	「경기도 K-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」 요구사항 조치결과
내용	○ 道(도) 감사요청, 신분상 조치 요구, 3개월 이내 의회 제출

- **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 주관 「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」** (2017. 1. 19. ~ 3. 10.)에서 K-컬처밸리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 통보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.
(감사기간 연장 : 2. 28 → 3. 10.)

※ 1.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 자료 수집 차 2회 방문

– 1. 12. ~ 13.(2일) / 1. 18. ~ 20.(3일) / 감사관 3명

2.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중복감사의 금지)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.

3. 『K-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』 감사요청 진행상황 알림 공문 기 발송
(감사총괄담당관-2473, 2017. 2. 20. 의사담당관,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)

(부서명 : 감사총괄담당관)

자료 문의	구 분	직 위(급)	성 명	전 화
	담 당 팀장	회계감사팀장	정 연 종	031-8008-2952
	담 당 자	행정 6 급	이 태 희	031-8008-2951

【 경기도의회 K-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】

건명	「경기도 K-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」 요구사항 조치결과
내용	외국인투자기업 신용정보 확인 방안 마련

☐ 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.

(부서명 : 투자진흥과)

자료 문의	구 분	직 위(급)	성 명	전 화
	담 당 팀장	투자환경팀장	심 창 섭	031-8008-2985
	담 당 자	행정 6 급	박 진 형	031-8008-2779

외국인투자기업 신용정보 확인 방안

□ K-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결과(시정요구사항)

- 외투기업과 사업추진 시 기업신용평가 실시
- 「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에 국내외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 시스템 구축

□ 개선 방안

- 신용정보 확인에 관한 사항을 「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
- (조례 내용) 공유재산을 임대 받는 외국인투자기업(국내외 주요 출자기업 포함)에 대해 대부계약 이전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신용정보 확인
 - 해외 출자기업이 신설법인 등으로 기업신용정보 조회가 어려울 경우 모기업 또는 주요 출자자 신용정보를 확인
 - 등록 주소지, 자본금 및 매출액, 지분구조 및 출자현황 확인

□ 향후계획

- 2017. 3월 : 조례 개정 심의 및 시행

현 행	개 정 안
(신 설)	제28조의6 (신용정보 확인)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임차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(국내 외의 주요 출자기업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대부계약 이 전에 기업신용정보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해외 출자기업이 신설법인 등으로 기업신용 정보 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모기업 또는 주요 출자자 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기업신용정보를 확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1. 등록 주소지 2. 자본금 및 매출액 3. 지분구조 및 출자현황 ③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 시 필요한 경 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.
(신 설)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공유재산 임대료 적용례)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.